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 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 
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3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
- 금연지도원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

### 2. 주요내용

- 금연지도원 위촉규정 신설
-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마련
-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규정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 
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건강도시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,  
문의전화 : 3396-6345, FAX : 3396-8884, 메일 : lazy1114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 
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금연지도원 제도 운영)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의2(금연지도원 제도 운영)</p> <p>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